

2026년 제3회 창원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창원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창원시의회의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임용예정 부 서	담당 직무
일반 행정	한시임기제 8 호	1명	필요시 ~2027. 6. 30. (휴직자의 휴직기간)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 의회 일반 행정 업무 ○ 발령 부서 소관 예산 집행 ○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복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2.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 자)

○ 직무 관련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 관련)
일 반 행 정 (한시임기제8호)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사무·회계관리 경력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반드시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가 어려울 경우,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

4. 보수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따라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구 분	임용등급	근무시간	봉급액		비 고
			봉급기준액	보수 산출 내역	
일 반 행 정	한시임기제 8호	주35시간	2,378,300원	2,378,300원*35/40시간 =2,081,010원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 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입 가능)

나. 근무 조건 1일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복무는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본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 시행(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일 시	장 소	
2026. 8. 10.(월) ~ 2026. 8. 12.(수)	2026. 8. 19.(수)	2026. 8. 24.(월)	창원시의회 3층 소회의실	2026. 8. 24.(월)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angwon.go.kr>)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

나. 접수방법: 동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제출(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접수기간: 2026. 8. 10.(월) ~ 8. 12.(수) / 평일기준 3일간
- 방문접수: 09:00 ~ 18:00 (12:00 ~ 13: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창원시의회 의회동 3층)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 양식 활용

등기우편 접수 안내

- ▶ 주 소: 우(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
- ▶ 유효 일: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근무시간(18:00) 내 도착해야 함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
- ▶ 응시수수료: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5,000원)’ 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
- ▶ 기타사항
 - 등기우편은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055-225-5314)으로 반드시 전화 확인 후 송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 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angwon.go.kr>) 공고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angwon.go.kr>) 공고
-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임용 자격이 부여됨

7. 제출서류 ※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	[별지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8·9급(8·9호): 5,000원 ▶ 수납처: 창원시청 본관 1층 민원실 ^{인증기 날인} ▶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적용 불가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해당증명서 제출 필요)	[별지 제2호]
③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u>경력증명서</u>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	[별지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	[별지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3매 이내 ▶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⑨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	[별지 제8호]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u> 별지 제8호 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u>창원시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u>	
⑩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u>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직무 관련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u>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경력(재직)증명서 상 직무분야 증빙이 안될 경우 [별지 제9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별지 제9호]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별지 제10호]
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미 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⑭ 자격증(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면접시험일 기준	
※ <u>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u>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 임용 시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055-225-5314)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